

#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97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성이 강화된 관광진흥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
- 나. 서울관광재단의 설립목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재단의 사업, 정관 기재사항, 임원 및 이사회,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4조부터 제9조)
- 나. 기본재산의 조성, 출연금 교부 및 기금 설치, 운영재원, 수익사업, 사업연도,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10조부터 제15조)
- 다. 업무의 위탁 및 대행, 지도·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16조부터 제1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, 민법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
- 다. 협의사항
 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없음
  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 : 해당없음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제외대상

(4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원안동의

(5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17. 6. 8. ~ 6. 28.) 결과 : 별도 붙임

(2) 비용추계 등 자료 : 별도 붙임

※ 작성자 :   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임진규 (☎ 2133 - 2810)

##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) ① 재단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② 재단은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광진흥기관 및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한다.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
2. 국내·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
3. 기업회의, 인센티브관광, 국제회의, 전시회 등 육성 지원
4.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
5.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

6. 관광시장 조사·연구·컨설팅 및 정보 제공
7. 국내·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
8.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 및 협력지원
9.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
10.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
11.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
1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
13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

제5조(정관)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
5.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
6.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
7. 이사회에 관한 사항
8.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9. 공고에 관한 사항
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1. 해산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시장(이하

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하며,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6조(임원)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

②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

③ 이사장과 대표이사,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제7조(임원의 직무)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8조(이사회)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이사회 구성 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특정 성(性)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.

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.

제10조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제11조(출연금 및 기금)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위탁사업수입금,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3조(수익사업)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

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·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
2.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·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

제16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

제17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.

제18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조례 제4587호 「서울특별시  
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서울관광마  
케팅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일부터 폐지한다.



##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재단 출연금(기본재산 및 운영비)

-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

- ▶ 조례안 제10조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▶ 조례안 제11조(출연금 교부 및 기금) ①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근거 :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
- 가격기준 : 서울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
- 추계기간 :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('18~'22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억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 '18)	2차년도 ( '19)	3차년도 ( '20)	4차년도 ( '21)	5차년도 ( '22)	합계
총 계		404	373	384	395	408	1,964
세 출 (출연금)	○ 기본재산	42					42
	○ 사업비	280	289	298	307	318	1,492
	○ 인건비	56	57	58	60	61	292
	○ 운영경비	21	22	23	23	24	113
	○ 성과급	5	5	5	5	5	25

※ 인건비는 총원 126명 기준으로 작성(정규직 96명, 사업계약직 30명)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억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						
시비	지방세수입	404	373	384	395	408	1,964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 간							
기 타							
합 계		404	373	384	395	408	1,964

## 5. 덧붙이는 의견

- 재단 전환시 예상되는 사업비는 서울시와 재단간 역할분담(서울시 사무에서 재단사무로 이관)에 따라 재정운영 주체가 변동되는 사항으로 추가적 재정투입은 아님
- 다만, 재단 설립 후 5년간 비용추계가 1,964억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광진흥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실행, 협찬 수익 확대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재단의 서울시 재정의존도를 낮출 계획임

6. 작성자 :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임진규(02-2133-2810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기본재산 : '18년 예산(안) 추정액(422억원)의 10.4% 반영

※ 기본재산 규모는 주요 관광진흥기관(한국관광공사, 제주관광공사, 부산관광공사 등)의 기본재산규모(10~30%)와 서울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

2. 연간예산 :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, 성과급

※ 사업비는 연 3% 증가, 인건비는 연 3.5% 인상, 운영경비 연 1.6% 인상  
성과급은 5억원 규모로 동일하게 가정

연도	항 목	내 역	예산금액 (억원)	산출기초
	<b>총 계</b> ('18년~'22년)		<b>1,964</b>	
2018	재단설립 준비금	기본재산	42	
	재단 운영	인건비	56	▶ 조 직 : 2본부 1실 1부로, 10개 팀 ▶ 인 원 : 126명(정규직 96명, 비정규직 30명) ▶ 내 용 : 급여, 수당, 퇴직급여, 복리후생비 등
		운영비	21	▶ 비급여성 복리후생비, 법정부담금, 업무추진비, 교육훈련비, 여비, 통신비, 일반관리비, 행사 및 홍보비, 사무관리비 등
		사업비	280	▶ 콘텐츠 개발 : 도보관광체험상품 개발·운영, 서울쌌머세일 등 ▶ 관광마케팅 : 글로벌마케팅, 서울관광설명회, 해외관광시장 교역전 등 ▶ 관광정보·안내 : 서울관광홈페이지 운영, 관광정보센터 운영 등 ▶ 관광사업 지원 : 디스커버서울패스, 모바일 관광장터 운영 등 ▶ MICE : MICE 유치 및 개최지원, MICE 관광지원 및 민관협력 등
		성과급	5	
		계	404	

연도	항 목	내 역	예 상금 액 (억 원)	산 출기 초
2019	재단 운영	인건비	57	▶ 조 직 : 2본부 1실 1부로, 10개 팀 ▶ 인 원 : 126명(정규직 96명, 비정규직 30명) ▶ 내 용 : 급여, 수당, 퇴직급여, 복리후생비 등
		운영비	22	▶ 비급여성 복리후생비, 법정부담금, 업무추진비, 교육훈련비, 여비, 통신비, 일반관리비, 행사 및 홍보비, 사무관리비 등
		사업비	289	▶ 콘텐츠 개발 : 도보관광체험상품 개발·운영, 서울쌌머세일 등 ▶ 관광마케팅 : 글로벌 마케팅, 서울관광설명회, 해외관광시장 교역전 등 ▶ 관광정보·안내 : 서울관광홈페이지 운영, 관광정보센터 운영 등 ▶ 관광사업 지원 : 디스커버서울패스, 모바일 관광장터 운영 등 ▶ MICE : MICE 유치 및 개최지원, MICE 관광지원 및 민관협력 등
		성과급	5	
		계	373	
2020	재단 운영	인건비	58	▶ 조 직 : 2본부 1실 1부로, 10개 팀 ▶ 인 원 : 126명(정규직 96명, 비정규직 30명) ▶ 내 용 : 급여, 수당, 퇴직급여, 복리후생비 등
		운영비	23	▶ 비급여성 복리후생비, 법정부담금, 업무추진비, 교육훈련비, 여비, 통신비, 일반관리비, 행사 및 홍보비, 사무관리비 등
		사업비	298	▶ 콘텐츠 개발 : 도보관광체험상품 개발·운영, 서울쌌머세일 등 ▶ 관광마케팅 : 글로벌 마케팅, 서울관광설명회, 해외관광시장 교역전 등 ▶ 관광정보·안내 : 서울관광홈페이지 운영, 관광정보센터 운영 등 ▶ 관광사업 지원 : 디스커버서울패스, 모바일 관광장터 운영 등 ▶ MICE : MICE 유치 및 개최지원, MICE 관광지원 및 민관협력 등
		성과급	5	
		계	384	

연도	항 목	내 역	예상금액 (억원)	산출기초
2021	재단 운영	인건비	60	▶ 조 직 : 2본부 1실 1부로, 10개 팀 ▶ 인 원 : 126명(정규직 96명, 비정규직 30명) ▶ 내 용 : 급여, 수당, 퇴직급여, 복리후생비 등
		운영비	23	▶ 비급여성 복리후생비, 법정부담금, 업무추진비, 교육훈련비, 여비, 통신비, 일반관리비, 행사 및 홍보비, 사무관리비 등
		사업비	307	▶ 콘텐츠 개발 : 도보관광체험상품 개발·운영, 서울쌌머세일 등 ▶ 관광마케팅 : 글로벌 마케팅, 서울관광설명회, 해외관광시장 교역전 등 ▶ 관광정보·안내 : 서울관광홈페이지 운영, 관광정보센터 운영 등 ▶ 관광사업 지원 : 디스커버서울패스, 모바일 관광장터 운영 등 ▶ MICE : MICE 유치 및 개최지원, MICE 관광지원 및 민관협력 등
		성과급	5	
		계	408	
2022	재단 운영	인건비	61	▶ 조 직 : 2본부 1실 1부로, 10개 팀 ▶ 인 원 : 126명(정규직 96명, 비정규직 30명) ▶ 내 용 : 급여, 수당, 퇴직급여, 복리후생비 등
		운영비	24	▶ 비급여성 복리후생비, 법정부담금, 업무추진비, 교육훈련비, 여비, 통신비, 일반관리비, 행사 및 홍보비, 사무관리비 등
		사업비	318	▶ 콘텐츠 개발 : 도보관광체험상품 개발·운영, 서울쌌머세일 등 ▶ 관광마케팅 : 글로벌 마케팅, 서울관광설명회, 해외관광시장 교역전 등 ▶ 관광정보·안내 : 서울관광홈페이지 운영, 관광정보센터 운영 등 ▶ 관광사업 지원 : 디스커버서울패스, 모바일 관광장터 운영 등 ▶ MICE : MICE 유치 및 개최지원, MICE 관광지원 및 민관협력 등
		성과급	5	
		계	408	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(제5조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서울관광 마케팅(주) 노동조합 금창훈 외 16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관광진흥재단은 어감상 구시대적인 느낌이 있으며, 명칭이 길어 쉽게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진흥을 제외하고, 서울관광재단으로 간단 명료하게 변경 필요</li> <li>- 조례명, 제1조(목적), 제2조(적용범위) 수정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반영</li> <li>-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조례안 입법 예고시에도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「서울관광재단」으로 기관명칭 변경 의견 수용</li> </ul>
조승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단의 명칭을 서울알기재단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반영</li> <li>- 서울알기재단이라는 명칭은 서울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수용 곤란</li> </ul>
서울시 출연·출자 기관 노동 조합협의회 염상호 외 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4조(재단의 사업)에 다음 2개 항목을 추가 필요</li> <li>- 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 및 운영</li> <li>-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반영</li> <li>- 조례안 제4조 제11항 및 제13항에서 재단의 수익사업 추진 근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관광시설 개발·운영 등 사업 추가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</li> </ul>